

## 온라인콘텐츠활용교육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하 ‘온라인활용 교육’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온라인활용 교육’이란 정규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활용 교육’은 사이버강의, MOOC 강의, 플립러닝 강의로 구분한다.

② ‘사이버강의’는 강의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 제공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최소 15차시 이상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 교육방식을 의미한다.(개정 2018.12.20.)

③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강의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 제공하고 MOOC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강자와 교수자간 상호작용을 하는 온라인 교과목 또는 교육방식으로, 면대면 수업과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8.12.20.)

④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 전에 온라인 수업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내용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고 면대면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활동과 토론을 통해 수업의 이해를 높여 학습효과를 증진하는 교육방식을 의미한다.(개정 2018.12.20.)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온라인활용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천 온라인 콘텐츠 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부총장, 교육혁신원장,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제4조(학사운영)** ① 학사 운영은 가천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규정에 준한다.

② 온라인활용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Flipped Learning 교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2-1-22~2 제2편 학 칙

③사이버강의와 MOOC 강의는 학기별 교수 1인당 1강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5.29.)

④온라인활용 교육 교과목의 개설 책임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학생의 성적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는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⑥학칙 제37조 ④항에 의거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은 MOOC 강좌로 운영하며 강사에게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신설 2018.12.20.)

**제4조의2**(온라인콘텐츠활용강좌 개설)(신설 2018.12.20.) ①온라인콘텐츠활용강좌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으로 개설한다.

②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사이버강좌는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③사이버강좌는 정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3**(온라인콘텐츠활용강좌 개발 및 제작)(신설 2018.12.20.) ①사이버강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교안개발 및 강의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다.

②강의콘텐츠 제작은 1주 분량(1시간)을 1학점당 25분 이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4**(온라인콘텐츠 강좌 운영)(신설 2018.12.20.) ①사이버강좌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주별로 작성하여 해당 강좌를 운영한다.

②사이버강좌 교과목의 학생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온라인 출석, 퀴즈 등으로 한다.

**제4조의5**(강의콘텐츠 제작지원)(신설 2018.12.20.) ①제작 툴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원한다.

②강의콘텐츠 제작대상으로 선정되어 교안을 개발한 경우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수의 책무) 온라인 활용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강의자료의 구성, 설계, 개발, 등록 및 관리
2. 수강생 관리(강의진행 및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통한 이해도 향상 관리)
3. 강의 형태에 따른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구성 및 유지 관리
4. 수강생 평가
5. 그밖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 분장) 온라인활용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 기술 및 장비, 강의 설계 등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원한다.(개정 2018.12.20.)

**제7조(지적재산권)** ①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온라인활용 교육 콘텐츠 및 교재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보관하며, 지적재산권은 본교에 속한다.(개정 2018.12.20.)

②온라인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사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③개발된 강의콘텐츠 및 교재는 총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및 배포할 수 없다.(신설 2018.12.20.)

## 제 2 장 사이버강의

**제8조(사이버강의 콘텐츠 개발 구성요소 및 기본 단위)** ①사이버강의 콘텐츠는 음성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15차시 이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개발하여야 한다.

②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학점당 1차시의 수업 동영상 콘텐츠는 25분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학점당 1차시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사이버강의 개설 신청)** ①사이버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신청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사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해 학사지원팀에 협조를 구한다.(개정 2018.12.20.)

1. 사이버강의 교과목 개설 신청서 1부
2. 강의계획서 1부
3. (삭제 2018.12.20.)

## 제 3 장 MOOC

**제10조(MOOC 콘텐츠 개발 구성요소 및 기본 단위)** ①MOOC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면 MOOC의 기본단위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강의동영상
2. 온라인 활동 내역(퀴즈, 과제, 토론, 교수 피드백 등)(개정 2018.12.20.)
3. 시험 콘텐츠(개정 2018.12.20.)

## 2-1-22~4 제2편 학 칙

- ②제1항 제2호는 각 차시마다 수반되어야 한다.
- ③최소 12차시 이상의 강의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④1학점당 차시마다 25분 이상의 동영상과 25분 이상의 교과활동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⑤최소 2회 이상의 면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신설 2018.12.20.)

**제11조**(MOOC 개설 신청) MOOC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신청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사제반 업무 처리를 위해 학사지원팀에 협조를 구한다.(개정 2018.12.20.)

1. MOOC 개설 신청서 1부
2. 강의계획서 1부
3. (삭제 2018.12.20.)

**제12조**(타대학 MOOC의 학점 인정) 타대학 MOOC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 학기 MOOC 수강
3.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 또는 교수가 인정하는 관련 보고서 제출
4. 인정되는 MOOC 콘텐츠 사이트는 K-MOOC, Coursera, EdX, Udacity 로 제한함
5. MOOC 강의의 특성상 연관성이 있는 두 개의 교과목이 강의주치의 합이 12차시 이상일 경우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함
6. 평점(letter grade)가 제공되는 강좌에 한하여 학점 부여가 가능함
7. 전공 교과목의 경우 수강전 전공 학과장 및 학과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강 후 필요에 따라 최종 Report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함
8. 학과 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MOOC 강좌에 대한 수료증(certificate), 수강 관련 증빙(출결사항, 이수율, 제출과제·시험 등에 대한 성적), 별도의 최종 Report 등에 기반하여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평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제 4 장 플립러닝

**제13조**(플립러닝 콘텐츠 개발 구성요소 및 기본 단위) ①강의동영상이 기본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시의 수업 동영상 콘텐츠는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12.20.)

3. 7주 이상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강의동영상의 기본단위는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구분되어 구성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강의동영상을 모두 합하여 제1항 제1호의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18.12.20.)

③플립러닝을 수업운영을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올리는 온라인 수업자료는 담당교수가 직접 제작한 자료 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제14조**(플립러닝 개설 신청) ①플립러닝의 운영을 원하는 교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해당 강좌가 플립러닝 강좌임을 인증한다.

②학사지원팀은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특정 교과목에 대한 플립러닝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담당교수에 대한 지원) 플립러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플립러닝 개발 및 강좌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교원 및 수강생에게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1. (삭제 2018.12.20.)

2. (삭제 2018.12.20.)

3. (삭제 2018.12.20.)

4. (삭제 2018.12.20.)

5. (삭제 2018.12.20.)

6. (삭제 2018.12.20.)

7. (삭제 2018.12.20.)

8. (삭제 2018.12.20.)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1-22~6 제2편 학 칙

이 규정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